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1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임재주



## 【 목 차 】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II. 검토의견 .....	4
1. 입법 취지 .....	4
2. 조문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6
가.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제8조) -----	6
나.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9조) -----	10
다. 특별체류자격의 부여 및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제10조~제13조) -----	13
라.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제14조~제20조) -----	20
3. 종합의견 .....	25



이 법률안은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위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달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

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II. 검토의견

### 1. 입법 취지 및 입법의 타당성

#### ◎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주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아동에게 교육, 의료지원, 안전한 보호·양육,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임.

아동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취지이고,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국적 및 국내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 그러나 제정안 중 이주아동에 대한 대책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이주아동의 국내체류 허용과 관련된 부분은 「출입국관리법」과 각각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모두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주아동 중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등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입학,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이 허용되므로, 제정안의 주된 적용대상은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이주아동이라 할 것임.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률과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중인 이주아동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sup>1)</sup>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 조문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가.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계획수립(제4조부터 제8조까지)

#### ◎ 주요 조문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li><li>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li><li>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li><li>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ol> <p>③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p>
--

1) 보건복지부도 같은 의견임.

고, 법무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교육 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주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 및 차별방지정책 등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sup>2)</sup>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범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3)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주아동을 아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제정안의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sup>4)</sup>과도 그 범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그러므로 이주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부처 사이의 업무 중복 및 혼선, 예산의 중복적 집행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책추진의 통일성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주아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5)6)

4)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현재 문화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이민배경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이주 아동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임.

6) 법무부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같은 의견임.

## 나.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9조)

### ◎ 주요 조문

제9조(이주아동의 출생등록) 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주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안이유와 같이 현재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신원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등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제정안 제9조의 ‘출생등록’은 국적취득과 결부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그 의미 및 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출생등록제도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속지주의(출생지주의)와 부합하는 제도인데, 제정안 제9조는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생등록을 한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것이 「국적법」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속

지주의(출생지주의)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함.

- 현행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  
여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녀는 출  
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sup>7)</sup> 이 경우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의 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자녀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신고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신고’제도를 택하고 있음.<sup>8)</sup>

- 따라서 만일 제정안이 국적 및 출생신고와 관련한 속지주의

- 
- 7)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  
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  
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  
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참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먼저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고<sup>9)</sup> 「국적법」에 국내에서 출생등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역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한 필요함.<sup>10)</sup>

□ 한편, 제정안 제9조가 국적취득과 관련한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원칙의 도입을 직접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보는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연결하여 볼 때 사실상 속지주의의 도입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됨.

- 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에게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이주아동은 강제퇴거 되지 아니하고(제정안 제11조), 법무부장관은 이주

---

9)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법무부도 같은 의견임.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강제퇴거의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정안 제12조).

- 따라서 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을 연결하면,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은 국적 및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주아동의 부모 역시 강제퇴거를 유예받음으로써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속지주의 원칙의 도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sup>11)</sup>

□ 그러므로 먼저 이에 대한 검토 및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저촉을 막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 특별체류자격의 부여 및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제10조부

---

11)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이와 같이 장기 체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적법」상 귀화요건의 일부를 갖추게 될 수 있음.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터 제13조까지)

### ◎ 주요 조문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제10조에 따른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아동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제10조에 따라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 부모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을 보호조치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아동에 대한 특별체류자격 부여 등(제10조, 제11조)

□ 제정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sup>12)</sup>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출생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12)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 그러나 현재도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61조<sup>13)</sup>에 따라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주아동 또한 체류허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제정안은 제10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정안은 체류허가의 특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1조와 저촉됨.

- 또한,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지나치게 불확

---

13)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한 개념으로, 행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sup>14)</sup> 제정안 제10조는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같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이주아동의 부모의 체류자격 부여(제12조)

□ 제정안 제12조는 이주아동에게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주아동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어야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조장하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불법체류를 연장하거나 합법화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sup>15)</sup>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에게 의무적으로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같은 의견임.

15)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같은 의견이고, 2010. 10. 22. 김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도 같은 취지임.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증면제(B-1)<sup>16)</sup>, 관광·통과(B-2)<sup>17)</sup>, 단기방문(C-3)<sup>18)</sup> 등 간단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뒤 의도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아동의 부모까지도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는 「출입국관리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현재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의 양육권을 이유로 불법체류중인 부모의 체류를 연장하거나 합법화하는 명시적인 입법례는 없음.

<해 외 사 례 >

**(미국)** 미국은 가족결합권을 이유로 한 불법체류 부모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2010년 이래 불법체류 부모 20만4800명을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 하였고,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개별법이 아닌 내부지침(Policy Directives)\*\* 등으로 묵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Jesus,Araceli v. U.S. Court of Appeals for 3rd Cir.(2011)

\*\* 2013년 8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녀가 있는 불법체류자 가정 특별고려 지시 전달’이라는 지침서를 시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강제퇴거를 자제토록 하였음.

**(호주)** 1986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속지주의에서 보충적 속지주의로 전환<sup>19)</sup>하였고, 호주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의 부모 일방이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호주시민권을 부여함. 아동의 학습권 보호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명문규정은 없음.

**(일본)** ‘아동의 학습권 보장 = 특별체류허가’라는 등식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체류

- 16) 4. 사증면제(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17) 5. 관광·통과(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18) 8. 단기방문(C-3)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허가 허용 여부를 아동의 출생지, 체류기간, 구사 언어, 정착성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스웨덴) 모든 아동에게 학습권은 인정되나, 부모가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 또한 체류허가를 받지 못함

(홍콩) 학교가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 학생비자 신청 후 체류허가 가능(단, 아동의 부모에 대한 합법화 조치는 없음)

(싱가포르, 핀란드) 별도 체류허가 조치 등 구제조치 없음

- 또한 법무부는 2010년 9월 1일 발표한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을 통하여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아동이 계속 수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출국을 유예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퇴거유예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서까지 명시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sup>20)</sup>

### (3) 통보의무의 면제(제13조)

-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지원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주아동 및 그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에게 「출입국관

---

19) 호주는 국적법상 속지주의 채택으로 인하여 아동을 이용한 불법이주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1986년 국적법을 개정함.

“The conferring of citizenship by birth under the present Australian Citizenship Act has been mercilessly exploited by illegal immigrants and visitors who have deliberately had a child in Australia so that those children may become permanent residents and the parents can therefore become automatic citizens of this country”(Australia, Senate 1986, Debates, vol. S 115, p. 3562.)

“출생에 따라 시민권을 제공하는 현재의 호주 시민권법은 호주에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가져온 불법 이민자와 방문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악용되었고, 그 자녀들은 영구적인 거주자가 될 수 있었으며, 부모들도 자동적으로 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다”

20) 법무부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같은 취지임.

리법」 상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아동 및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까지도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출입국관리법」과 지나치게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sup>21)</sup>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sup>22)</sup>에 따라 이주아동의 학업 및 진료,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있음.

## 라.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 주요 조문

제14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1)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5조(건강권) 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6조(보호·양육권) 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7조(아동 보호조치 등) ① 이주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거나 보호조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18조(청소년 지원) ① 이주아동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9조(한국어 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이주아동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

## (1) 교육을 받을 권리(제14조)

□ 제정안 제14조는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sup>23)</sup> 따라서 헌법상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및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할 때 이주아동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문언보다는 국가가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2) 건강권, 보호·양육권(제15조, 제16조)

□ 제정안은 이주아동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및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

23)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sup>24)</sup> 「의료급여법」<sup>25)</sup>은 국민에게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sup>26)</sup>은 대한민

2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①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 25)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에 한하여  
각각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등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를

-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포함하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sup>27)</sup>

### (3) 아동 보호조치(제17조)

- 제정안은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아동보호법」상 아동의 범위에서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에 따라 이주아동에게도 「아동보호법」상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다만 보호조치에 따라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되더라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

27)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및 의료·양육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6년 133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75억 3,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3.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과 중복되거나, 특히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불법체류중인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과 충돌될 우려가 있고, 상당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오지원 입법조사관(788-2183)